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95
----------	-------

발의연월일 : 2026. 4. 8.

발 의 자 : 박용갑 · 채현일 · 문진석
장철민 · 백혜련 · 정준호
조인철 · 박상혁 · 어기구
허영 · 박희승 · 황명선
김윤 · 진성준 · 권칠승
이재관 · 서삼석 · 복기왕
소병훈 · 최혁진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수선유지급여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권자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 등에 대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의 경우 수선 후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하며, 보장기관이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를 제한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2 신설 등).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급한다”를 “해당 주택등에 대하여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한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
2.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한 보장기관별 재정적 지원의 기준 및 규모와 적정 인력 기준 및 규모
3.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실시되는 각 수선의 종류별 표준 시공 기준 및 단가를 고려한 수선유지비 지원액
4.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실시되는 각 수선의 종류별 시공품질에 대한 기준
5.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실시되는 수선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 방안

6. 보장기관이 보유한 수선유지비 관련 정보와 연계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및 수선유지급여 시스템의 활용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선유지비 지급 방법 및 수선 시공품질의 점검 등) ① 수선유지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선의 종류별로 최소한의 시공품질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선의 실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수선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수선의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품질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수선실시기관에 시공품질 점검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선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공품질 점검 결과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한 수선의 시공품질이 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한 시공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선실시기관에 하자 보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선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명령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수선실시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선의 시공품질 등 수선의 실시와 관련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설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선실시기관에 수선의 실시와 관련된 공사에 대한 해당 건설사업자 등의 참여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선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장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선의 실시와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사업자 등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수선의 실시와 관련된 공사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선의 시공품질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된 수선 공사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수선유지비(이하 “수선유지비”라 한다)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u>지급한다.</u></p> <p>②·③ (생략)</p> <p>④ <u>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p>	<p>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 -- ----- ----- ----- -----<u>해당 주택등에 대하여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1. <u>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한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u></p> <p>2. <u>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한 보장기관별 재정적 지원의 기준 및 규모와 적정 인력 기준 및 규모</u></p> <p>3. <u>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u></p>

<신 설>

<신 설>

실시되는 각 수선의 종류별 표준 시공 기준 및 단가를 고려한 수선유지비 지원액

4.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실시되는 각 수선의 종류별 시공품질에 대한 기준

5.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하여 실시되는 수선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 방안

6. 보장기관이 보유한 수선유지비 관련 정보와 연계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및 수선유지급여 시스템의 활용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수선유지비 지급 방법 및 수선 시공품질의 점검 등)

① 수선유지비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은 수선의 종류별로 최소한의 시공품질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선의 실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수선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수선의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품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수선실시기관에 시공품질 점검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선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공품질 점검 결과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한 수선의 시공품질이 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시공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선실시기관에 하자

보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선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명령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수선실시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선의 시공품질 등 수선의 실시와 관련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설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선실시기관에 수선의 실시와 관련된 공사에 대한 해당 건설사업자 등의 참여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선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장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선의 실시와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사업자 등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수선의 실
시와 관련된 공사에 대한 참여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